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해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9호

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에

따라 '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'의 역할을 하고 있는

'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'의 위원으로

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
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,

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